

한국 기록보존의 발전방향

김 선 영 *

〈목 차〉

- | | |
|-------------------------------|--------------------------------|
| 1. 머리말
2. 기록보존제도와 기록물 관리현황 | 3. 기록보존 발전방향
4. 관련학계에 대한 제언 |
|-------------------------------|--------------------------------|

1. 머리말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권인수 작업을 시작하면서 일부 국가기관의 공문서파기 의혹부터 제기하였다. 이를 계기로 언론기관과 학계에서는 다른 정부조직은 축소, 폐지하더라도 국립기록청과 같은 강력한 기록보존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지하듯이 서구에서는 프랑스혁명을 계기로 기록보존이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서 발전하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기록보존법이 제정되어 있고,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기관, 학교, 교회, 기업체 등에도 기록보존소가 설치되어 있다. 수준높은 기록보존문화가 기반이 되어 민주주의가 성숙하고, 세계문명을 선도하는 학술이론과 사상이 창조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근대이전에는 세계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기록보존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당대에는 도덕정치의 실현에 기여하였고, 그 결과물인 조선왕조실록은 시공을 초월하여 민족사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일제침략과 국권상실로 인한 전통의 단절, 정부수립 이후 권위주의적 정치문화와 경제발전 우선정책 등에 가려져 오늘날에는 기록보존이 가장 낙후된 나라가 되어버렸다.

정부에서는 비록 때늦은 감은 있으나, 그 동안 방치해온 기록보존업무를 혁신할 수 있는 발전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국가기록물 관리에 관한 근거법률을 제정하고, 기록보존기관을 확대강화하며, 기록물 관리체계의 개선과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전문인력 확보와 예산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 총무처 정부기록보존소장

그런데 이와같은 발전대책 중, 관련학계의 적극적 동참과 협력없이는 곤란한 과제가 있다. 기록보존에 관한 학술이론 정립과 전문가 양성에 관한 일이다.

이에 발표자는 국가기록 보존업무 현황과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발전대책들을 소개하는 것이 관련학계의 적극적 동참과 이해를 촉구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기록보존 현실에 걸맞는 학술이론 정립과 전문가 양성이라는 현안과제를 해결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여 이 자리에 임하게 되었다.

2. 기록보존제도와 기록물 관리현황

가. 기록보존 근거법령과 기구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기록물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법률이 없다. 총무처 정부 기록보존소를 비롯하여 각급 국가기관은 사무관리규정이나 자체적으로 정한 공문서내 규 등에 의하여 기록보존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즉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무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총무처 정부기록보존소에서, 입법부는 국회공문서내규에 의거하여 국회사무처에서, 사법부는 법원사무관리규칙에 의거하여 법원보존문서관리소에서 관리한다.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체 공문서규정과 사무관리규칙에 의해서 관리한다. 또 육·해·공군은 자체 사무관리규정에 의거하여 각각 보존한다. 고기록물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사료의수집및보존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수집하고, 또 서울대 규장각, 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 등에서는 특별한 근거규정없이 고기록물을 보존 또는 수집하고 있다.

사무관리규정이란 공무수행을 위한 업무처리지침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국가 기록물의 수집, 보존, 공개활용에 관한 근거법률이 아니다.

사무관리규정에 의거한 기록보존업무의 연혁을 살펴보면, 갑오개혁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근대적 정치제도를 수립한 갑오개혁세력은 각급기관의 업무처리지침으로서, 각부각아문통행규칙(各部各衙門通行規則)을 만드는데, 이것이 오늘날과 같은 근대적 사무관리규정의 효시였다.

조선총독부시기에는 조선총독부처무규정(朝鮮總督府處務規程)을 만들어 식민통치문서를 관리하였다. 정부수립 이후에는 정부처무규정(政府處務規程), 그리고 공문서에 관한 사항만 모아서 정부공문서규정(政府公文書規程)을 만들어 쓰다가 1991년도에 다시 사무관리규정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변천사 속에서 1969년도에 총무처 소속으로 정부기록보존소가 설립된 것은 기록보존의 새로운 전환점이었다. 각급 행정기관에서 영구보존대상 기록물이 누적되자, 집중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때부터 각급 행정기관이 생산하는 공문서, 도면, 카드, 사진, 녹음테이프, 영상자료 등의 각종 기록물이 집중보존되기 시작하였다. 1984년도에는 최신식 보존시설을 갖춘 부산지소가 개설되었다. 정부수립50주년이 되는 올해는 정부대전청사로 이전할 예정인 바, 대전본소, 부산지소, 서울사무소의 체계를 갖추게 된다.

나. 기록보존업무 현황과 실태

(1) 기록물의 생산과 보존연한 분류

각급기관에서는 기록물을 생산하면, 다음과 같이 7종의 보존연한으로 분류한다. 보존연한의 세부기준은 사무관리규정의 하위법령인 국무총리령 '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에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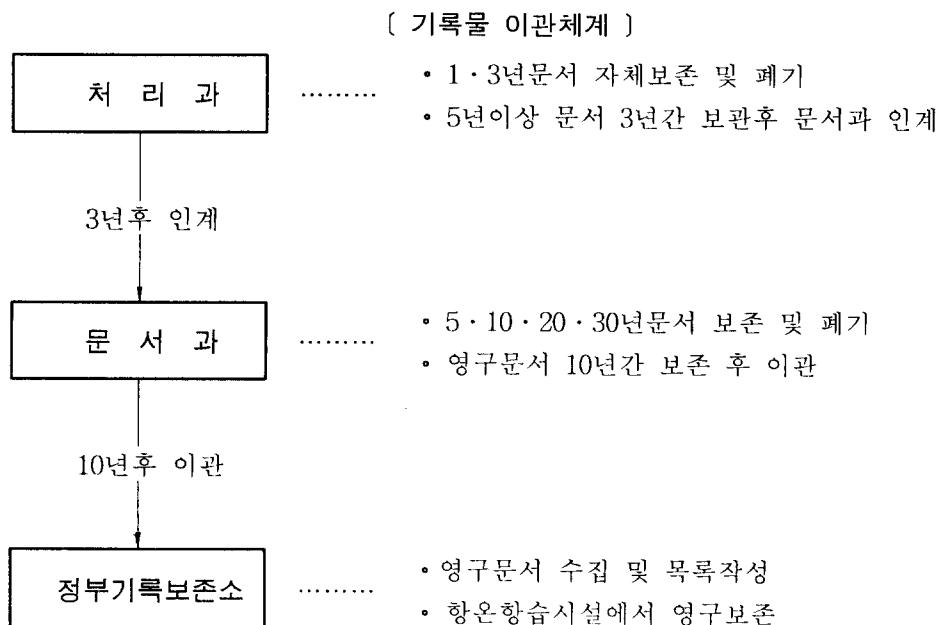
- 1년 - 일일명령, 회보 등 경미한 사항
 - 3년 - 각종 증명서 발급관련 문서
 - 5년 - 예산, 결산 및 회계관계 문서
 - 10년 - 일반정책에 관한 계획, 조사, 연구 및 보고서류
 - 20년 - 법령, 제도, 정책관련문서
 - 30년 - 중요한 법령, 제도, 정책관련문서, 훈령 예규 원본문서
 - 영구 -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정책관련문서
- (위 예시는 대표적인 사항만 제시한 것임)

이 규칙은 모든 국가기관이 생산하는 기록물의 보존·폐기를 판가름하는 기준으로서, 매우 중요한 실무지침이다. 그런데 위 예시와 같이 보존연한 평가기준이 공무수행을 위한 공문서보관개념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정책관련 문서는 영구문서로 보존되지만, 그 집행내역을 알 수 있는 기록물은 일정연한이 지나면, 폐기되도록 되어 있다. 또 행정의 투명성 보장, 학술연구 및 정보자료 활용을 위한 각종 증명서, 예산관련문서, 조사보고서류, 연구자료 등이 제대로 선별되어 보존할 수 없게 되어 있다.

(2) 기록물 이관절차

모든 공문서는 생산 후, 해당기관에서 보존연한이 지나면, 폐기되고, 영구문서만 13년 경과 후, 총무처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된다.

다만, 공문서폐기의 신중성을 기하기 위하여 문서생산기관에는 문서평가심의회, 정부기록보존소에는 정부공문서평가심의회를 두어서 20년, 30년문서의 폐기를 심의한다.



기록물 이관절차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은 기록보존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한 행정직, 기능직들이 보존·폐기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중요 기록물들이 함부로 폐기되거나, 처리과, 문서과의 창고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3) 기록물 수집과 보존, 공개활용

정부기록보존소는 매년 문서생산기관으로부터 영구문서 생산현황을 보고받고, 이관 일정을 지정하여 기록물을 이관받는다. 이관기록물은 문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기록물, 조선총독부문서, 고기록물, 행정박물, 행정간행물 등으로 분류되어 국가기록물 관리번호가 부여된다.

정부기록보존소는 이 기록물들에 대해서 사료적, 행정적, 증빙적 가치와 공개등급을 평가하고, 광화일시스템 또는 마이크로필름으로 수록한 후, 원본기록물은 항온항습 시설이 완비된 서고에 영구보존한다.

이 기록물은 공개기준이 다음과 같이 4종으로 구분되어 열람자료로 제공된다. 또 중요 기록물은 특정 주제별로 자료집으로 편찬되거나, 전시자료로 활용된다.

제1종 - 국가기밀, 대외비 자료 등으로서 관련법령 절차에 의해서만 공개

제2종 - 개인의 신분, 재산관련자료로서 이해당사자에게만 공개

제3종 - 공무수행과 연관된 기록물로서 생산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쳐서 공개

제4종 - 국민모두에게 즉시 공개

그런데 현행 사무관리규정은 정부기록보존소의 기록보존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하는 근본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즉 현행 규정에서는 특별한 사유없이 문서생산기관이 업무수행상 이관을 보류한다고 해도 이를 시정할 권한이 없다. 또 행정의 투명성 보장이나 국민의 알권리 신장을 위하여 중요 기록물을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보장이 없다.

다. 기록물 관리현황

(1) 연간 기록물 생산량

정부기록보존소에서 '97년도에 576개 기록물 생산기관을 대상으로 연간 기록물 생산량을 조사한 결과, 매년 약 767만권(1권당 200매 기준)을 생산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를 보존연한별로 구분해 보면, 영구문서가 약 18만권(2%)을 차지하였다.

(연간 기록물 생산량 현황)

(단위:천권)

계	1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영구
7,670 (100%)	903 (12%)	2,437 (32%)	2,380 (31%)	1,421 (18%)	127 (2%)	224 (3%)	178 (2%)

그런데 실제로 총무처 정부기록보존소로 매년 이관되는 문서량은 약 1 ~ 2 만권에 불과한 실정이다. 각급기관의 처리과 또는 문서과에서 이관을 미룬 채, 보유하고 있는 문서가 약 200만권에 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2) 보존기록물 현황

'97년말 현재 정부기록보존소의 부산지소 지하서고에는 문서류 약 37만권을 비롯하여 도면, 카드, 사진, 영상필름, 행정간행물 등 많은 기록물이 보존되어 있다.

(정부기록보존소의 기록물 보존현황)

구 분	소 장 량	비 고	
문 서	366,639권	조선시대	조선왕조실록 848책(국보151-2호)
		근대시기	갑오개혁, 대한제국 공문서 70권
		총독부시기	경무국문서, 행정기록 등 26,473권
		광복이후	국무회의록, 경제개발 등 339,067권
도 면	1,194,502매	토지조사사업 지적원도, 일기도, 설계도 등	
카 드	1,560,031매	인사기록, 연금카드, 병적카드 등	
시청각기록물	760,092점	사진, 영상필름, 녹음테이프 등	
마이크로필름	197,813롤	보존용 및 열람용(1롤은 문서 2,000면 수록)	
행정간행물	114,706권	행정백서, 연보, 통계자료 및 외국정부 주요간행물 등	
총 계	4,193,783점		

위 기록물들의 내역을 분석해 보면, 사무관리규정에 의거한 기록보존의 문제점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조선왕조실록을 제외한 기록물들은 극히 단편적, 비체계적으로서 국가변천사를 제대로 규명하기 어렵다. 또 국무회의 안건철, 대통령에 보고한 주요 사업 계획안 등 국가정책관련 문서들은 수집되어 있으나, 그 세부적 추진내역을 살펴볼 수 있는 기록물은 없다.

다만, 인사발령대장, 판결문, 지적원도 등 개인의 신분·재산관련 기록물들은 비교적 양호하게 수집되어 있으나, 행정의 투명성 보장, 학술연구 및 정보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록물은 극히 빈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기록물 공개활용도 개인의 신분·재산권 증빙을 위한 민원열람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라. 기록보존업무 부실화 요인

우리나라의 기록보존업무가 이상과 같이 낙후하게 된 요인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가장 근원적인 첫번째 문제로서 기록보존에 관한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결과, 국가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가기능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둘째는 기록물 생산단계부터 이관, 보존, 공개활용에 이르기까지 기록물 관리체계가 극히 낙후되어 있고, '정보관리'개념이 결여된 채, '보존위주'의 관행이 습관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기록보존에 관한 이론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고, 기록물 관리업무가 비전

문가에 의해서 취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는 기록을 중요시하는 기록문화가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범국민적으로도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들이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켜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록보존업무의 발전을 저해한 것으로 생각된다.

3. 기록보존 발전 방향

동서고금을 통해서 기록보존문화는 민주주의의 진전과 함께 발전하여 왔다. 정부수립5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나라는 선거를 통한 최초의 정권교체를 이룩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변화추세에 부응하여 다각적인 발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가. 기록보존에 관한 법과 제도의 정비

정부기록보존소에서는 몇 해 전부터 미국, 프랑스 등 기록보존 선진국가의 기록보존 제도를 비교분석하는 등 기록보존법 제정을 준비하여 왔다. 올해에는 관련학계와 학술간담회, 공청회 등 광범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서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새로 제정할 법률의 주안점은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보존가치가 있는 모든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가기능을 확립하는데 두고 있다. 그래서 국가기록물 관리범위를 모든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개인이 생산한 기록물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 기록보존업무를 '보존위주'가 아니라 '정보관리' 차원으로 발전시켜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알권리 신장에 기여하고, 학술연구 및 정보자료로 유감없이 활용하여 학계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 법에 기초하여 설치될 기록보존기구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검토하고 있다.

국가기록물 관리업무의 중추적 총괄기관으로서 중앙에 국립기록청을 두고, 광역시와 도단위에도 지방기록보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적 추앙을 받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념관을 설치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또 입법부 사법부 헌법기관 등에는 특수기록보존소를 설치하여 자체생산 기록물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한다. 정보기관 군기관 등과 같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기록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국립기록청에 이관하여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기록보존기구를 정비하는데, 집중보존과 분산보존의 원칙을 여하히 정립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한 논점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3권분립체제이고, 또 각급기관에서 방대한 기록물을 생산하고 있기 때-

문에 국립기록청에서 모든 기록물을 수집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그렇다고 현재와 같이 고립분산적으로 관리할 수는 없다. 때문에 기록물은 분산보존될 지라도, 일원적으로 집중보존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예컨대 기록물 관리표준화, 목록과 내용의 상호 검색체계 등이 이루어진다면, 분산과 집중의 장점을 모두 보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앞으로 제정될 기록보존법에는 처벌조항도 반드시 규정하여 중요 기록물을 함부로 폐기, 인멸, 무단반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조선시대에도 사초를 분실하고, 왜곡하며, 막칠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는 중형이 있었기에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훌륭한 기록물이 생산될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

나. 기록물 관리체계의 개선과 전산화

현행 기록물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록물 선별·분류기준을 다시 개정하고, 각급 기록물생산기관에 자료관을 설치하는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개선책을 가능하게 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기록보존소는 이미 작년도부터 첨단 전산시스템을 도입하여 기물물관리체계의 전산화를 추진 중에 있다.

(1) 기록물 선별, 분류체계 개선

현행 공문서분류및보존연한에관한규칙은 기록물의 보존기간, 보존방법, 보존장소, 공개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면 개정하고자 한다.

보존기간은 행정의 투명성 확보, 행정업무 참고자료, 역사자료, 신문·재산권 관련 증빙자료, 학술연구 및 정보자료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현행 7종에서 보다 단순화된 5종으로 재조정하고자 한다.

보존방법은 원본보존과 매체보존으로 구분하여 기록물의 양은 줄이되, 정보량은 최대한 늘이는 방법을 강구하고, 보존장소는 자체활용, 지방기록보존소, 국립기록청 이관 등으로 구분하여 활용편의를 제고하고자 한다.

공개여부는 기록물 생산단계에서는 현행 정보공개법에 의거하지만, 일단 활용이 끝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연한에 관한 기준을 정립하고자 한다.

또 대통령기록을 비롯하여 특정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집방법을 강구하고자 한다. 예컨대 청와대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은 정식 결재를 받은 문서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에게 올라가는 각종 보고서, 서한, 회의록, 의전일지 등이 매우 중요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수집방법이 필요하다.

(2) 기록물 이관체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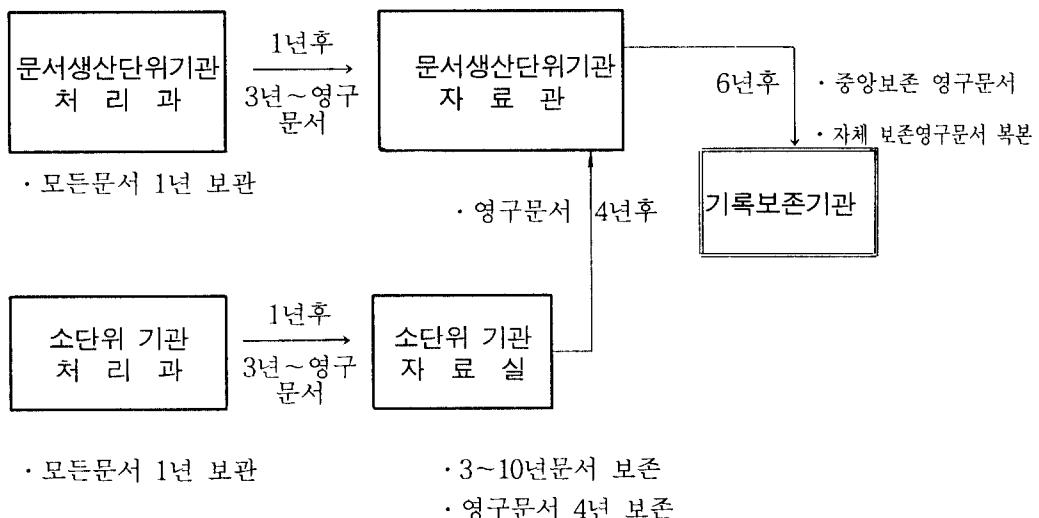
기록물 이관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군청, 도청, 중앙부처 등 각급기관에는 자료관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자 한다. 현행 총무과의 문서창고 관리, 정보공개, 행

정자료실 운영 등을 통폐합하여 자료관으로 확대개편하고, 기록물 생산단계부터 정보 관리차원으로 끌어올리고자 한다.

자료관 설치를 통한 기록물 관리체계의 발전방향은 아래 도표와 같다.

(국가기록물 이관 및 관리체계의 기본모형)

- 3~10년문서 보존
- 자체보존 영구문서관리(매체)
- 중앙보존 영구문서 6년보존



(3) 국가기록물의 전산화 · 광화일화

기록보존기관이 각급기관의 기록물 생산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은 기록물의 체계적 수집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생산단계부터 기록물 목록이 전산 입력되어야 이 작업이 가능하게 된다.

기록물 생산기관은 기록물을 이관한 후, 불편없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목록 뿐만 아니라 원본기록물의 화상(畫像)까지 전산입력되지 않으면 안된다. 또 오늘날의 사회는 이미 첨단 정보화 사회로 변화되어 외국에 있는 기록물도 곧바로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정부기록보존소에서는 이러한 변화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록물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미 작년도부터 기록물의 전산화 광화일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기록물의 생산과 이관, 등록과 보존, 공개활용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전산관리시스템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이 작업이 일정궤도에 오르면, 공개가능자료는 정부기록보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공중망을 통해서 기록물을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도서관 등과도 상호 유기적 공동활용체계가 가능할 것이다.

다. 기록보존 전문인력 확보

기록보존업무는 일반행정업무와 달리 전문지식을 필요로 한다.

예컨데 1950년대 문서만 해도 고어투 용어와 초서체 한자를 쓴 경우가 많다. 총독부문서는 현대 일본어와 다른 고어투와 초서체 한자로 기록되어 있다. 또 방대한 기록물을 대상으로 보존·폐기여부를 평가하고,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역사학, 문헌학, 행정제도와 법률, 정보관리, 보존과학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다.

미국 프랑스 등 기록보존 선진국가에서는 대학교에 기록보존학과가 개설되거나, 기록보존학과가 설치되어 아카비스트가 양성되고 있다. 기록보존직렬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프랑스의 사례를 들면 에꼴드샤르뜨라고 하는 3년제 고문서대학에 프랑스사, 행정제도사, 라틴어 영어 독어, 기록물관리학, 기록물보존학, 법학, 재정회계학이 개설되어 있다. 중국에도 4년제 당안대학이 있고, 석사과정, 박사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기록보존업무를 수행할 기록보존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앞으로 법과 제도가 개혁되면, 각급기관의 자료관, 지방기록보존소, 특수기록보존소, 국립기록청에서 많은 전문인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앞으로 장기적 발전과제로 기록보존직렬을 신설하고, 또 전문가 양성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기록보존소에서는 현안과제 해결을 위하여 기록보존업무와 가장 연관성이 있는 역사학과의 석·박사, 문헌정보학과 출신자들을 학예직, 사서직으로 임용하고 있다. 또 각급기관의 문서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록보존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연수시키고 있다.

앞으로 우수한 기록보존 전문인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가 기록보존제도 개혁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관건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4. 관련 학계에 대한 제언

국가기록 보존업무는 학술연구활동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학술연구의 주된 기능은 현실의 제반 현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새로운 이론을 창출하는데 있다. 이를 체득한 학생들이 사회로 진출하여 현실의 과제를 해결한다. 따라서 현실에 기초한 학문이 발전할 수록 국가와 사회는 그 만큼 발전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록보존업무가 낙후되어 있는 결과, 우리나라 현실에 기초한 실학적 학문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 학계가 서구 중심의 종속적 위치에서 벗어나 창조적 학문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선결작업이 학술연구 자료의 체계적 수집과 활용, 즉 현행 기록보존업무의 개선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에 발표자는 문현정보학계에 대해서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는 역사학계 등 기록보존업무와 가장 관계가 깊은 여타 학계와 더불어 우리나라 현실에 걸맞는 기록보존학을 정립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일에 적극 동참해 달라는 것이다.

둘째는 기록보존의 중요성을 범국민적으로 인식시키고, 국가기록물을 수집, 보존하는 사업에 관련학계가 적극 앞장서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법과 제도의 개혁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모든 공직사회, 그리고 모든 국민이 기록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할 때, 기록보존제도의 개혁이 실효를 거둘수 있을 것이다.

최근 역사학계, 언론계 등이 중심이 되어 ‘한국국가기록연구재단’이라는 순수 민간 단체를 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단절된 기록보존전통을 계승 복원하기 위한 기록문화운동이 자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정부수립 50주년이 되는 올해는 정부가 주도하는 기록보존에 관한 법과 제도의 개혁, 관련학계의 적극적 동참, 그리고 민간차원의 기록문화운동이 밀거름이 되어 우리나라 기록문화가 한차원 승화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외국과의 기록보존 비교)

구 分	미 국	프 랑 스	중 국	인 도	한 국
기록보존 관련법률	기록물관리법 대통령기록물법	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당안법	공공기록물 보존법	없 음
수집대상 범 위	입 법 부 사 법 부 행 정 부 개인기록물	행 정 부 개인기록물	모든 국가기관 개인기록물	행 정 부 개인기록물	행 정 부
중앙보존 기 관	독립기관 장관급 628명 1,360만권	문화공보부 소속 국장급 945명 1,200만권	국무원 소속 차관급 1,200명 188만권	인력개발부소속 차관급 440명 360만권	총무처 소속 국장급 124명 40만권
신하기관	기록보존센타(13) 지역보존소 (15) 대통령기념관 (9) 2,300명 2억권 내외	모든 국가기관에 직원 파견 801명	제1.2역사당안관 국립당안관(32) 사진당안관 등 4,800명 1,600만권 내외	지소(3) 민간기록물등록지 소(1)	없 음
지방자치 단 체	주립보존소(50) 하급보존소 다수	도립보존소(103) 시립보존소(120) 4,600만권	성·시·현당안관 (3,270) 1억1천만권 내외	주립보존소(22) 하위보존소 주별 3~7개	없 음
별 도 보존기관	의회기록보존소 인사기록보존소 전자기록물센터	병원기록보존소 외무부기록보존소 국방부기록보존소	외교부당안관 공안국당안관 해방군당안관 인민법원당안관	의회기록보존소 사법기록보존소 감사원기록보존소	육해공군보존소 법원보존소
각급기관	기록물센터 인력·시설 구비	문서국 인력·시설 구비	당안실 인력·시설 구비	문서담당실 인력·시설 구비	문서담당자겸무 문서창고
이관시기	30년	비활용시	10~20년	25년	13년
공개시기	30년	30년	30년	30년	비공개 사유 소멸시
전문인력	전문인력 64% 박사급 12% 2년제 전문교육등	전문인력 44% 박사급 15% 3년제 고문서학교등	전문인력 29% 박사급 8% 인문대학 당안학원	전문인력 75% 박사급 24% 기록보존학교(1년)	석사급 6% 박사급 6% 실무 교육(3일)